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012821 판결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254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0128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D

4. E

피고, 피항소인 1. 사단법인 H

2. 주식회사 I

변론 종결 2017. 2. 22.

판결 선고 2017. 4. 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20672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사단법인 H(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각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항소취지에서는 원고 A, B는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원고 D, E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각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 A, B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단의 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1	B	2013. 4. 4.	70,000,000원	VIP Member 개인회원
-----	---	-------------	-------------	-----------------

○ 제9면 3행 "승계하지 않았고"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 본래 피고 H의 소유로서 J와의 임대차 종료 후 위 피고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국유재산은 위 피고가 새로 대부받았다. J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I에 고용되었으나, 이들 모두 J에서 퇴사한 후 피고 I에 새로 고용되었고, 고용노동청에 J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거나, 위 퇴사 후 재취업 전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체육지도자는 T, U에서 R, S으로 교체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2행 "제소 전 화해를 하기로 약정하였고,"를 "임대차 종료 시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을 피고 H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소 전 화해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밑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2호증의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H가 2014. 1. 20.경 J 비상대책위원회회장에게 "1. 본회가 J 골프연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 수신인들은 향후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서의 이용조건, 입회보증금 반환기한 등과 관련하여 본회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 위 제1항의 협의가 성립하면, 수신인들이 (주)J에 납입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채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된다. 3. 위 제1, 2항은, 수신인들이 (주)J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 H가 2014. 2. 14.경 분당구청장에게 '조만간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피고 H에 이전될 전망이고, 회원 보증금 문제 등 관련법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니, 제3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권과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를 요청할 경우 피고 H에 연락해 주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 H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들 중 상당수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제1심 공동피고들 중 일부와 사이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H가 J 비상대책위원회장과 분당구청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협의하여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회원들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 A, B는 피고 H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 위임하여 J와 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Y의 이사 Z 등을 신설회사의 임원으로 내세워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을 설립하게 한 후 AA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AA 계좌를 거쳐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영업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5 내지 31호증, 을 제20,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 B가 주장하는 영업양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을 제18, 22, 23, 24, 28호증(가시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Y가 2014. 2. 10. 피고 H와 사이에 '피고 H가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1)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4. 2. 12. J 대표이사 AB과 사이에 J가 Y의 골프연습장 인수 업무 수행에 협조하면 J에 보수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AB이 2014. 2. 7. 해임되어 등기상으로만 J의 대표이사로 있었음을 알고(AB의 해임 등기는 2014. 2. 13. 마쳐졌다) 2014년 4월경 위 약정을 해제한 사실, 2014. 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J 측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점거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 등이 시위를 하는 등 피고 H 또는 피고 I가 골프연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 H가 2014. 3. 1. AA과 사이에 '피고 H가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2)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용역의 내용이 변경·확장되었다), 이에 AA이 J에 대한 투자자인 AC, AD의 협조를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H로부터 받은 용역수행비 중에서 AC, AD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A,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오현규

판사김봉원

1)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피고 H에 이전하는 업무, 그 소유권 및 점유권 확보조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대적 상황에 대한 조치와 법적 대응 등 제반 업무,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협상, 기타 골프연습장 소유권·점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구체적으로는, 부대시설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피고 H에 이전하는 업무, J의 채권·채무관계 현황파악 및 필요 시 법인과 대표의 재산 파악, 골프연습장 운영권 확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대적 상황에 대한 조치와 법적 대응 및 현 영업권 폐업조치 후 골프연습장업 개업을 위한 제반 신고·등록, J에 대한 체납임대료·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등 업무, AE AF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 확인 및 그 말소, J 경영책임자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고소 등 조치, 기존 회원들과의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협상 및 진성 회원 여부 확인, 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련한 임차인들과의 협상, 기타 골프연습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인적·물적 영업준비 및 추가조치 발생시 이행, 기타 상기 용역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